

# 2025년 신규기관 평가 교육컨설팅 시설급여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


※ 2025년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기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# 목 차

**1**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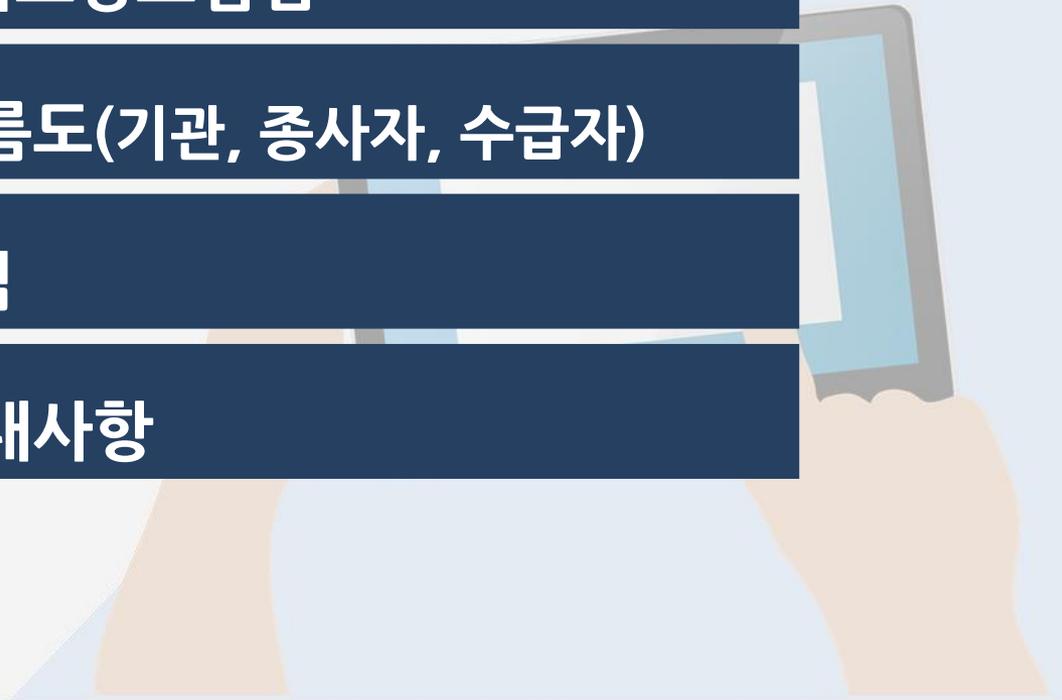
**2**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**3**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**4** 운영 흐름도(기관, 종사자, 수급자)

**5** 자체점검

**6** 기타 안내사항



# 목 차

1

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
3

노인장기요양보험법

4

운영 흐름도(기관, 종사자, 수급자)

5

자체점검

6

기타 안내사항



#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
## 가. 평가 목적

### 장기요양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

#### ❖ 알권리 충족·선택권 확대

- 장기요양기관 평가 실시
- 평가결과 공개방법 다양화

#### ❖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

- 평가결과 하위기관 수시평가
- 사전·사후 관리로 서비스 개선 지원

#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
## 나. 평가 구분

정기  
평가

3년 주기로 장기요양 기관평가 실시(절대평가, A~E등급)

시설  
(기간연장)

재가  
(짝수)

재가  
(홀수)

시설  
(전체)

2022년

2023년

2024년

2025년

수시  
평가

수시평가  
미실시

시설  
(전체)

재가  
(짝수)

재가  
(홀수)

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(E) 및 미평가기관 재평가 실시



# 1

##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
### 다. 평가 방법

#### 평가예정통보

- (1차) 정기평가 계획공고 후 30일 이내 평가일정(분기별) 사전 안내
- (2차) 평가예정일 7일 전까지 '평가예정통보서' 서면 통보
- 평가일정 · 평가예정일 확인 방법  
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로그인 / 장기요양정보시스템 / 기관평가 / 평가예정일 조회

#### 기관 방문 현장평가

기본 3인 1팀 수행 ... (공단평가자 2인, 외부평가자 1인)

※ 기관 규모 등에 따라서 평가자 추가 투입 가능

-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 면담
- 상담 · 총평 후 전자조사표 전송 및 확인(불가피할 경우 복사본 교부)



# 1

##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
### 라. 평가 등급 결정 및 조정

#### 평가 등급 결정

- A등급 : 평가점수 90점 이상
- B등급 : 평가점수 80점 이상
- C등급 : 평가점수 70점 이상
- D등급 : 평가점수 60점 이상
- E등급 :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

#### 평가 등급 조정

- 행정처분 등에 따른 1개 등급 하위 조정
- 부당청구 등에 따른 등급 조정
- 최하위 등급 조정



#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
## 마. 평가 결과공표

- 평가결과 공개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The건강보험 앱, 수급자 제공용 '장기요양기관 현황'등

(예시)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최근 및 직전 평가결과 2회)

개별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수준 ★개수 및 총점 표시

급여종류	구분	총점	기관운영	수급자존중	서비스제공	서비스결과	
입소시설 30인이상	A(최우수)	100	28	24	25	23	
	2025 정기평가	98 ★★★★☆	27	24	24	23	
	전체평균	81	23	19	21	18	
급여종류	구분	총점	기관운영	환경 및 안전	수급자권리보장	급여제공	제공결과
입소시설 30인이상	B(우수)	86.35	★★★★☆	★★★★★	★★★★☆	★★★★★	★★★★☆
	2021 정기평가		78	95	66	91	78
	전체평균	83.56	78	93	76	79	84

(예시) 수급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

장기요양기관	정원	소재지	연락처	평가등급*	평가점수	평가 영역별 점수				급여종류 노인요양 시설
						기관운영	수급자존중	서비스제공	서비스결과	
00요양원	00명	서울시 00구 0로 1	010- 1234- ****	A(최우수) 2025 정기	98	27	24	24	23	○

\* 평가등급 표기: 평가등급, 평가거부, 평가비대상, 신설기관



1

#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
## 마. 평가 결과공표

### 평가 결과 확인 방법
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로그인/장기요양정보시스템/기관평가/평가결과통보

###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(예시) [정기]

장기요양기관명		장기요양기관기호	
급여종류	노인요양시설(개정법)	대표자	
평가년도		평가등급	

구분	총점	기관운영	환경 및 안전	권리보장	급여제공	제공결과
환산점수 (배점비중)	100.00	15.00	25.00	11.00	39.00	10.00
점수	90.00	13.00	22.00	10.00	36.00	9.00
전체평균						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54조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- 가산지급일까지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며, 가산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

# 1

##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
### 바. 평가 가산금 지급 및 제외

#### 가산금 지급기준

**최우수기관 가산금:** 급여종류별 **상위 20%** 범위에 속하는 A등급

- 상위 10% 범위 내 기관: 평가 직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%
- 상위 10% 초과 ~ 20% 이하 기관: 평가 직전년도 공단부담금의 0.5%

※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기평가 계획공고 참고

**품질개선 가산금:** 하위 기관 품질 견인을 위해 신설된 가산금

- 직전 평가등급 대비 4단계 향상: 100만원
- 직전 평가등급 대비 3단계 향상: 50만원

※ 최우수기관(상위 20% 이내) 가산금과 중복 지급 불가(더 큰 금액을 지급)



#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
## 바. 평가 가산금 지급 및 제외

### 가산금 지급 제외기준

- 평가등급 **하향조정(차하위 또는 최하위)사유**가 발생한 기관
- 가산 지급 전에 **휴·폐업, 업무정지, 지정취소**된 기관
- 노인보호전문기관의 **노인학대 사례판정**을 받은 기관
- **노인 및 직원 인권** 관련 **평가지표 미충족** 기관
  - ※ 노인인권보호(3점) 및 직원인권보호(2점) 지표합산점수 5점 미만 기관
- 현지조사 결과 **부당청구 또는 형사사건** 등으로 **수사 의뢰된 기관**은 행정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급 보류
  - ※ 추후 행정처분을 받으면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 및 평가 등급 조정
- 기타 사유로 가산이 부적절하다고 평가위원회가 **심의·의결**한 기관



# 목 차

1

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
2

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4

운영 흐름도(기관, 종사자, 수급자)

5

자체점검

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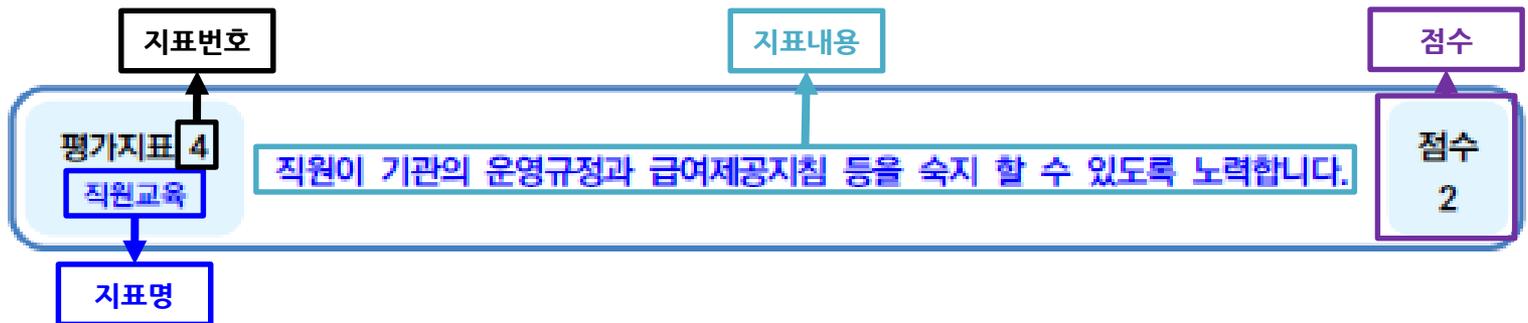
기타 안내사항

##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### 가. 평가 매뉴얼 구성

#### 평가 매뉴얼 구성

- 평가방향 : 평가지표의 목적
- 평가기준 :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
- 평가척도 : 채점기준 및 적용결과
- 확인방법 :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확인방법
- 관련근거 : 평가지표와 관련된 법령 등





##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### 가. 평가 매뉴얼 구성

평가지표 4  
직원교육

직원이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
점수  
2

평가방향

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,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.

		평가기준	평가방법
①		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. •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: 확인방법 참조	기록, 현장, 전산
②		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, 각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.	면담
③		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, 각 지침별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.	면담
기준	점수	채점기준	
①	1	①번의 13개 항목을 충족함	
	0.75	①번의 11개 ~ 12개 항목을 충족함 (노인인권보호지침, 「직원」 인권침해 대응 지침 충족필수)	
②	0.5	평가기준을 충족함	
③	0.5	평가기준을 충족함	

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점수 채점 기준

■ 지표적용기간 : 2022.1월 ~ 2025년 평가일

- 기준①,③번 「직원」 인권침해 대응지침의 비치 및 교육실시는 평가계획 공고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.
- 기준②,③번의 신규직원 7일 이내 교육실시는 평가계획 공고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.

■ 확인방법

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확인 방법



##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### 나. 평가 방법

#### 평가 방법

- 기관 관련문서나 자료 등의 기록 확인, 기관 내·외부 환경 등 현장확인, 직원 및 수급자 관찰·면담·시연, 공단 전산자료, 보호자 유선 확인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
-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 현황 등을 파악,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을 위해 영수증 및 지출내역 등의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

## 2

#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## 나. 평가 방법

### 평가 방법

- 분기, 반기, 연 1회 등 주기 확인하는 평가기준은 **회계연도 기준 적용**, 시행 일자 확인
-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·관리하는 경우 **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** 원칙으로 함(단,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(1365, VMS)은 인정함)
- 평가관련 자료는 **평가일 현재, 평가 당일 평가종료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**함(단, 유선만족도 등 일부 지표는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평가)



## 2

#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## 다. 장기요양기관 협조사항

### 장기요양기관 협조사항

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

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



##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### 라. 용어 설명

#### 용어 설명

##### 급여제공직원

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, 물리(작업)치료사로 해당 시군구에 인력신고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함

##### 직원

해당 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(시설장 포함)을 의미함(단,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제외)

##### 평가종료월

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함

##### 평가계획 공고월

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을 게시한 월을 의미함

##### 서명

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씀 (점검자, 작성자, 참석자, 진행자 등 행위(제공)자를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을 정자로 기입해야 함)

##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### 라. 용어 설명

#### 용어 설명

##### 비치

잠금 장치가  
없는 장소에서  
쉽게 열람할 수  
있도록 관리·마련



##### 게시

여러 사람에게  
알리기 위하여  
내붙이거나 내걸어  
두루 보게 함



##### 보관

잠금 장치가 있는  
캐비닛 등에  
보관





# 목 차

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
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**3 노인장기요양보험법**

5 자체점검

6 기타 안내사항



### 3

##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### 가.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

#### 제32조의3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)

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. (시행 2019.12.12.)

- 진입요건 완화로 2024년 노인요양시설 351개소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6개소로 총 507개소가 신규 개설, 14개소(2.8%) 폐업함('25.3.6.기준, 급여유형별)
- 장기요양서비스 질 저하 문제 발생으로 제도 개선 필요



### 3

##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### 나.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



#### 제32조의4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)

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 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 (시행 2019.12.12.)

※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

####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(장기요양기관 진입-평가-퇴출 관리 강화)

< 평가 결과와 연계한 부실운영기관 퇴출 >

- 기관평가, 행정처분 이력 등 그간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 기관 관리 강화

: 기관평가 미흡, 행정처분 이력 등으로 갱신기준 미충족 기관은 심층평가 후 퇴출 실시('25.12월~)



### 3

##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### 다.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

#### 제37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)

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 (시행 2019.12.12.)

※ 제1항 제3호의 7.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

#### 제60조(자료의 제출 등), 제69조(과태료)

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※ 제1항 제7호.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·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



# 목 차

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
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3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**4 운영 흐름도(기관, 종사자, 수급자)**

6 기타 안내사항



## 4

# 운영 흐름도

## 가. 기관운영



## 기관 비치 자료

## 기관 게시 자료

### ☑ 운영규정 11개 항목

지표 1

- ① 조직·인사·급여·회계·물품 규정
- 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
-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(계약기간, 계약목적,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,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)
-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-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-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
- 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
- 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
- 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·면책범위에 관한 사항
- 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- ⑪ 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


# 4

## 운영 흐름도

### 가. 기관운영



## 기관 비치 자료

## 기관 게시 자료

### ✓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

지표 4

#### <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>

- ① 종사자 윤리지침
-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
-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
-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
-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
-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
-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
- ⑧ 노인인권보호지침
- ⑨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
- ⑩ 개인정보보호지침

#### < 기타지침 3개 항목 >

- ⑪ 「직원」인권침해 대응지침
- ⑫ 고충처리지침
- ⑬ 야간근무지침



4

운영 흐름도

가. 기관운영



기관 비치 자료

기관 게시 자료

실내환기 일일 점검표

지표 9

환기수칙에 따라 환기 실시,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

- 점검표 필수사항
- : 날짜, 환기시간(시작시간) 등
- 각 층마다 1개 이상 비치

(예시)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

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(예시)

점검일자: 2025년 1월 1일 ~ 2025년 1월 7일

구분		1.1 월	12 화	13 수	14 목	15 금	16 토	17. 일
1차 환기	환기시간	09:00 -10:00						
2차 환기	환기시간	12:00 -12:10						
3차 환기	환기시간	14:10 -14:30						
4차 환기	환기시간	16:30 -16:50						
5차 환기	환기시간	19:30 -19:40						
6차 환기	환기시간	-						



## 4

# 운영 흐름도

## 가. 기관운영

기관 비치 자료



기관 게시 자료

### ✓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8개 항목

지표 18(17)

- ① 운영규정 개요
- ② 종사자 근무체계(직종별 직원배치 인력, 주·야간, 평·휴일 직원 인력 등)
- ③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
-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⑤ 시설의 규모, 설비
- ⑥ 화재·영업·전문인배상 책임보험 증권사본
- ⑦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
- ⑧ 월간 프로그램 표(프로그램명, 일정 등의 정보 포함)



## 4

# 운영 흐름도

## 가. 기관운영

기관 비치 자료



기관 게시 자료

### ☑ 노인인권보호

지표 19(18)

노인학대 신고·예방에 관한 정보 게시 및 수록

- 시설 내 게시

: 노인학대 신고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, 노인학대 유형

- 노인학대 예방정보 수록

: 정기간행물, 홈페이지, 홍보자료 등



## 4

# 운영 흐름도

## 가. 기관운영



## 홈페이지 정보게시

### ✓ 시군구 신고 / 홈페이지 등록 항목

지표 18(17)

(정보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)

#### ■ 시군구 신고 항목

: 주소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이메일주소, 직원현황, 시설현황, 급여종류, 정원,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정보

#### 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

: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, 사진, 홈페이지 주소, 교통편, 주차시설, 비급여항목, 현원, 예약 대기자 현황, 보험가입여부

◆ 경로 : 장기요양정보시스템 / 요양자원 / 장기요양기관 관리 /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

◆ 참고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알림·자료실 > 공지사항 > 게시번호 61000

“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”화면 정보게시 매뉴얼



4

운영 흐름도

가. 기관운영

## 홈페이지 정보게시

장기요양정보시스템

영양자원  
  급여계약  
  복지용구계약  
  가산및감액신청  
  급여비용청구  
  RFID  
  지급관리  
  기관평가  
  급여제공통합관리(시범)  
  급여제공서식  
 기타

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 
  장기요양기관관리  
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

영양자원>장기요양기관 관리  
   
   
   
   

장기요양기관의 정보게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6조에 의한 것입니다.

기본정보  
  정원·현원  
  비급여항목

홈페이지 주소   www. .kr  
 교통편   <대중교통 이용시>  
 주차시설   지상1층, 지하1층

보험가입여부

전문인배상책임보험    N    Y   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제1항에 따른 보험  
 손해배상책임보험    N    Y 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게시여부    N    Y   나의 블로그 > 공지사항에 게시한 후, Y로 체크

정보게시사항 중 시군구를 통해 변경해야 하는 항목
 

- 주소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이메일주소, 인력(변경)현황, 시설(변경)현황
- 위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3호)에 의거 해당 시군구에 변경 신고 하시면 그 내용이 자동 반영됩니다.

정보게시사항 중 기관에서 변경할수 있는 항목
 

- 교통편, 주차시설, 홈페이지 주소, 현원, 예약대기자 현황, 비급여항목, 사진, 공지사항

97% 항목보기

만정보 게시율이 97%입니다. 미게시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경로 : 장기요양정보시스템 / 영양자원 / 장기요양기관 관리 /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

4

운영 흐름도

가. 기관운영

## 홈페이지 정보게시

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npra301m01 요양자원>장기요양기관 관리

장기요양기관의 정보게시는 노인장기요양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한 것입니다. 정보게시율 97% 항목보기  
 \* 기관정보 게시율이 97%입니다. 미게시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기본정보 | 정원·현원 | **비급여항목** | 프로그램운영 | 계약의사 현황 | 협약기관 현황 | 게시·준수사항 | CCTV 설치 현황 | 사진 | 공지사항 | 게시판

홈페이지 주소: www. [redacted].kr  
 교통편: <대중교통 이용시> [redacted]  
 주차시설: 지상1층, 지하1층

**보험가입여부**  
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N  Y  
 손해배상책임보험  N  Y

**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**  
 게시여부  N  Y

정보게시사항 중 시군구를 통해 변경해야 하는 항목  
 - 주소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이메일주소, 인력(변경)현황, 시설(변경)현황  
 \* 위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3호)에 의거 해당 시군구에 변경 신고 하시면 그 내용이 자동 반영됩니다.

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\_정보미게시사항([npra301])

단기,주야간보호 정보게시항목 닫기

게시항목	게시	최종변경일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교통편	게시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주차시설	게시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홈페이지	게시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원현원	게시	2021-12-22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비급여항목	미게시	2021-11-24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프로그램운영	게시	2021-11-19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진	게시	

\* 현원정원, 비급여항목, 프로그램운영의 경우 내용(최종변경일)이 3개월이상 변경사항이 없으면 게시율이 떨어집니다.

4

운영 흐름도

가. 기관운영

홈페이지 정보게시

장기요양정보시스템

요양자원 급여계약 복지용구계약 가산및감액신청 급여비용청구 RFID 지급관리 기관평가 급여제공통합관리(시범) 급여제공서식 기타

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npra301m01

정보게시율 97% \*기관정보 게시율이 97%입니다. 미게시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기본정보 정원·현원 비급여항목 프로그램운영 계약의사 현황 협약기관 현황 게시·준수사항 CCTV 설치 현황 **사진** 공지사항 게시판

순번 분류 제목 파일 조회수 수정일 등록일

공지	프로그램	링크	Y	492		
공지	프로그램	붙임				
공지	프로그램	세션				
공지	프로그램	동화				

장기요양기관의 정보게시는 노인장기요양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한 것입니다.

장기요양기관의 정보게시시,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, 이메일주소, 인력(변경)현황, 시설(변경)현황, 위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(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23호)에 의거 해당 시군구에 변경 신고 하시면 그 내용이 자동 반영됩니다.

장기요양정보시스템

요양자원 급여계약 복지용구계약 가산및감액신청 급여비용청구 RFID 지급관리 기관평가 급여제공통합관리(시범) 급여제공서식 기타

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npra301m01

정보게시율 97% \*기관정보 게시율이 97%입니다. 미게시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기본정보 정원·현원 비급여항목 프로그램운영 계약의사 현황 협약기관 현황 게시·준수사항 CCTV 설치 현황 **사진** **공지사항** 게시판

순번 제목 파일 조회수 수정일 등록일

1	2022년 2월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일정보(치매전담)	Y	6	2022.02.17	2022.02.17
2	2022년 2월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일정보(일반)	Y	2	2022.02.17	2022.02.17
3	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(주야간보호센터)	Y	9	2022.02.17	2022.02.17
4	2022년 1월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일정보-치매	Y	5	2022.01.17	2022.01.05

공지 고정안함 \* 고정으로 등록 시, 공지사항 목록에 우선 노출됩니다.

제목 2022년 프로그램 일정보(치매전담)

내용 2022년 프로그램 일정보(치매전담)

첨부파일 2022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-치매.jpg 첨부파일 다운로드 파일상세 0.25 MB \* gif, png, jpg, jpeg, bmp 확장자를 가진 파일만 가능합니다. (4 MB 이내)

정보게시사항 중 시군구를 통해 변경해야 하는 항목  
- 주소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이메일주소, 인력(변경)현황, 시설(변경)현황  
- 위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(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23호)에 의거 해당 시군구에 변경 신고 하시면 그 내용이 자동 반영됩니다.

정보게시사항 중 기관에서 변경할수 있는 항목  
- 교통신, 홈페이지 주소, 현원, 예약대기자 현황, 비급여항목, 사진, 공지사항



4

운영 흐름도

나. 종사자 관리

건강검진

★ 건강검진

- ✓ 건강검진(결핵포함) 실시
- ✓ [주기] 매년
- ✓ [대상] 모든 직원
  - 대표자겸 직원·시설장, 고용 시설장 포함
- ✓ [필수사항] 5개영역
  - 계측검사, 요검사, 혈액검사, 영상검사 및 판정

※ 신규입사자

: 근무 시작일자까지 제출  
(입사전 1년 이내 결과)

지표 5 직원건강관리

건강관리

★ 근골격계 질환

- ✓ 근골격계 질환 검사 실시
- ✓ [주기] 매년
- ✓ [대상] 모든 직원
  - 대표자겸 직원·시설장 확인X
- ✓ [내용]
  - 일자, 검사자료, 대상자명
- ✓ 증상 있는 경우 조치
- ✓ 예방물품 구비
  - 전동침대, 목욕(이동)리프트

★ 직무스트레스 해소

- ✓ 직원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(연1회)

지표 5 직원건강관리

(신규)직원교육

★ (신규)직원교육

면담

- ✓ 운영규정, 급여제공지침 교육
- ✓ [주기] 매년
- ✓ [대상] 모든 직원
- ※ 신규입사자  
: 급여개시일부턴 7일 이내

지표 4 직원교육

# 4 운영 흐름도

## 나. 종사자 관리

### 건강검진 결과 불인정 예시

발행번호	검수번호
성명	
주민등록번호	
주소	
전화번호	

<b>&lt;관련일 확인일&gt;</b>				
	1회	2회	3회	4회
검진일	2012.06.20			
관정일	2012.06.23			

※ 본 건강진단결과서의 검진 항목 및 주기는 「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」을 따릅니다.

연혁번호: [redacted]    진단의사: [redacted]

발급일: 2012년 06월 27일

[redacted] 보건지소 [redacted]

검진 항목	1회	2회	3회	4회
	이질검사	정상		
	알타르스검사	정상		
	전염성피부질환	정상		
	흡부 (Oest PA)	정상		

비고

보건소장 [redacted]

전염성질병 등에 한정  
5개 영역 미충족하여  
**불인정**



# 4 운영 흐름도

## 나. 종사자 관리

### 건강검진 결과 인정 예시

흉부X-RAY	정상	예외반응	정상
간염검사	음	기타	
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.		20 7-31	
검사자 면허지		호	의사명
검사결과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상	간염예방접종	<input type="checkbox"/> 필요
합격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불합격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불필요
정양신체검사	<input type="checkbox"/> 필요	불합격사유및	
직업검사	<input type="checkbox"/> 불필요	환자유의서형	20 7-31
위와 같이 판정하였으므로 증명합니다.		발행일: 20 7-31	
유효기간: 판정일로부터 1년		병입명: [Redacted]	

검진일자, 판정일자  
모두 확인하여  
인정



# 4

## 운영 흐름도

### 나. 종사자 관리



#### 직원교육

#### 직원권익향상

★ **재난대응훈련** 기록  
(화재발생대응훈련)

- ✓ [주기] (시설) 반기별 1회  
(공생) 연 1회
- ✓ [대상] 모든 직원(수급자)
- ✓ [내용] 일자, 시간, 장소,  
참가자명, 훈련내용, 훈련사진

★ **노인인권** 기록 면담  
**및 학대 예방교육**

- ✓ [주기] 분기별 1회
- ✓ [대상] 모든 직원
- ✓ [내용] 교육일시, 강사명,  
교육내용, 교육방법, 참석자명  
(서명)

지표 11, 19(18)

★ **CCTV 영상정보** 면담  
**내부관리계획 교육**

- ✓ [주기] 연 1회
- ✓ [대상] 모든 직원

★ **임종돌봄** 기록 면담  
(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) **교육**

- ✓ [주기] 연 1회
- ✓ [대상] 모든 급여제공직원
- ✓ [교육자] 시설장

★ **구강건강 교육** 기록

- ✓ [주기] 반기별 1회
- ✓ [대상] 모든 급여제공직원

지표 15, 20(19), 26(25)

★ **5대 보험 가입 및 완납**

- ✓ [완납증명서]  
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

★ **복지제도 운영** 면담

- ✓ 운영규정, 사업계획에  
따라 2가지 이상 운영
- ✓ 복리후생, 포상 등  
- (불인정) 회식, 상장만 제공 등

★ **고충처리** 기록 면담

- ✓ 고충처리 절차 인지, 조치  
사항 면담
- ✓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 수  
렴 및 반영

지표 3, 6



4

운영 흐름도

다. 수급자 관리

입소

통합적 사정

★ 급여계약서 작성

- ✓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(모든 보호자·수급자)

★ 수급자 건강관리

- ✓ 결핵검진 포함 건강진단
  - 모든 수급자 연 1회 이상
  - ※ 신규수급자: 입소일까지 제출  
(검사일이 입소일 포함 30일 이내)

★ 직원 인권보호 안내

- ✓ 폭언·폭행·성희롱 예방,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포함하는 내용 문자 안내
  - 모든 수급자(보호자)에게 급여개시일까지 안내
  - 내용: 일자, 수급자명, 보호자명(관계), 안내방법

지표 19(18), 23(22), 7

★ 욕구사정, 위험도 평가, 인지기능 평가

- ✓ [주기] (시설) 반기별 1회 (공생) 연 1회
- ✓ [내용]
  - 욕구사정(11개 항목): 신체상태, 재활상태, 질병상태, 인지상태, 의사소통, 구강상태, 영양상태, 가족 및 환경상태, 주관적 욕구, 자원이용 욕구, 총평(서술형)
  - 낙상위험도, 욕창위험도, 인지기능 평가
  - ※ 신규수급자: 급여개시 전(입소당일 포함) 실시

★ 집중배설관찰기록표 작성

- ✓ [대상] 신규 수급자(급여개시일부터 14일 이내)
- ✓ [기간] 3일동안(수면시간 포함 연속 72시간)
- ✓ [내용] 매 시간 섭취량, 대소변여부, 기저귀 및 옷 교환 여부 기록 및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 조치

지표 24(23), 28(공생제외)



# 4

## 운영 흐름도

### 다. 수급자 관리

#### 급여제공계획

##### ★ 급여제공계획 수립

- ✓ [주기] (시설) 반기별 1회 (공생) 연 1회
  - ✓ [내용] 욕구사정, 낙상위험, 욕창위험, 인지 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 수립
  - ✓ [통보] 수급자(보호자) 설명 후 확인서명 받아 급여제공계획 적용시작(반영)일까지 공단 통보
    - 수급자명, 작성일자, 작성자명, 장기요양세부목표, 장기요양필요내용, 세부제공내용, 횟수 또는 시간, 종합의견
    - 30인 이상 시설은 물리(작업)치료 계획수립 필요
- ※ **신규수급자**: 급여개시 전(입소당일 포함) 실시

지표 25(24)

#### 급여제공·결과

##### ★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

- ✓ 급여제공기록지, 간호일지, 물리치료 기록지, 프로그램 제공일지 등으로 확인

##### ★ 급여제공계획 변경

- ✓ [내용] 급여제공계획 변경 사유 기록 및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 제공
- ✓ [변경사유] 기능상태 변화, 수급자 욕구 변화, 보호자 요구 등

##### ★ 급여제공 결과평가

- ✓ [주기] 반기별 1회
- ✓ [내용]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제공 결과 평가
- ✓ [반영] 급여제공 결과 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 계획 재작성

지표 25(24), 37(33)



# 4

## 운영 흐름도

### 다. 수급자 관리

#### → 상담·교육·회의

##### ★ 수급자(보호자) 상담

- ✓ [주기] (시설) 분기별 1회 (공생) 반기별 1회
- ✓ [내용]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
- ※ 신규수급자: 입소일로부터 4주간 주1회 이상 면담
- ✓ 상담결과 의견 급여에 반영(연 1회)

##### ★ 재난대응훈련

- ✓ [주기] (시설) 반기별 1회 (공생) 연 1회
- ✓ [내용] 일자, 시간, 장소, 참가자명, 훈련내용, 훈련사진

##### ★ 사례관리 회의

- ✓ [주기] (현원 30인 이상) 분기별 1회  
(현원 10~30인 미만) 반기별 1회
- ✓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급여 반영, 평가

지표 11, 13, 38(공생제외)

#### → 퇴소·서비스 만족도

##### ★ 전원·퇴소시 연계기록지 제공

- ✓ [내용] 전원·퇴소시 수급자와 급여 이용 종료 상담 실시후 연계기록지 작성·제공
- ✓ [확인사항]
  - 연계기록지 사본 또는 부분
  - 연계기록지 제공 대장
- ✓ 사망, 미퇴소 병원 입원시 작성 제외

##### ★ 만족도 조사(유선)

- ✓ [대상] 수급자의 주보호자
- ✓ [내용] 서비스 만족도 평가 5개 항목
- ✓ [방법] 유선, 공단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

지표 39(34), 45(40)



# 목 차

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
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3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4 운영 흐름도(기관, 종사자, 수급자)

**5** 자체점검



5

# 자체점검

## 가. 자체평가, 자체점검

### 자체평가, 자체점검

- ✔ **자체평가** :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기관 스스로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을 체크하고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도구
  - 자체평가 : **모든 기관**이 상시 점검 가능(정기평가 지표 기준)
  - 자체점검(신규) : **신규 기관**이 신규 운영컨설팅 사업 대상기관 선정 전 실시 (신규 운영컨설팅 점검항목 기준)

○ 자체평가 등록 nprb100m01

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(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)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3조(평가지표)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합니다. 공단은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 자체평가란?

• 평가구분 자체점검(신규) • 급여종류 04.방문요양 • 평가관리번호   • 조사영역 전체

No	자체평가 자체점검(신규)	관리번호	급여종별	장기요양기관번호	장기요양기관명칭

5

자체점검

가. 자체평가, 자체점검

자체점검 등록 방법

- 등록 경로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기관 로그인 > 업무포털 접속 > 기관평가 > 자체평가 > 자체평가 등록

요양자원 급여계약 복지용구계약 가산및감액산정 급여비용청구 RFID 지급/기타정수 기관평가 급여제공서식 기타 개발가이드 디자인 가이드

자체평가 등록 nprb100m01

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(장기요양급여의 권리 평가)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3조(평가 실시)그 결과에 따라 잘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합니다. 공단은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 프로그램을 제공

• 급여종류 이.입소시설30인이상 • 평가관리번호 • 조사영역 전체

No	평가관리번호	급여종별	장기요양기관번호
1		이.입소시설30인이상	

자체평가 > 자체평가 등록

자체평가란?

조회

기관명칭	조사영역구분	대상자명	결과완료
	기관		N



# 5

## 자체점검

### 가. 자체평가, 자체점검

## 자체점검 등록 방법

- 등록 방법 :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Y 또는 N으로 체크하고  최종점검 체크박스 클릭하고 저장(최종점검 저장시 수정 불가)

○ 자체평가 등록 nprb100m01 기관평가 > 자체평가

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(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)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3조(평가지표)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합니다. 공단은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

• 급여종류  • 평가관리번호  • 조사영역   최종점검

No	평가관리번호	장기요양기관번호	장기요양기관명칭	기관		중사자		수급자(우선)		가점		평가결과입력완료	결과등록마감여부	마감여부
				결과완료	대상자	결과완료	대상자	결과완료	대상자	결과완료	대상자			
<input type="checkbox"/>				0	0	0	0	0	0	0	0	N	N	N

□ 평가지표 점수 등록

No	평가요소	문항	Y	N	필수누락 사항	배점	평가척도					평가 점수
							우수	양호	보통	미흡	해당없음	
1	운영규정	기관은 운영규정을 비치하고,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.				2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0
		1. 조직,인사, 급여,회계,물품 규정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		1-1. 조직		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
		1-2. 인사		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

5

자체점검

가. 자체평가, 자체점검

결과 확인

- 결과 확인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기관 로그인 > 업무포털 접속 > 기관평가 > 평가조사표  
(평가구분, 급여종류, 평가연도, 평가관리번호 선택 및 조회)

○ 평가조사표    nprb103m01

• 평가구분 **자체평가**    • 급여종류 04.방문요양    • 평가연도 2025    • 평가관리번호     **조회**

□ 평가결과 목록

No	평가구분	급여종류	기관번호
	정기평가		
	수시평가		
	<b>자체평가</b>		
	신규운영컨설팅		
	자체점검(신규)		

조회결과 - 건

**평가결과**    세부내역

구분	총점	기관운영	환경·안전	권리 및 책임	급여제공
해당기관	<input type="text"/> / <input type="text"/>				
		제공결과	가점지표	종사자관리	수급자관리
		<input type="text"/> / <input type="text"/>			



# 목 차

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

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

3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4 운영 흐름도(기관, 종사자, 수급자)

5 자체점검

**6** 기타 안내사항



## 6

# 기타 안내사항

## 가. 공지사항 및 매뉴얼 확인

### 매뉴얼 및 Q&A

- ✔ **경로**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알림·자료실 > 장기요양 기관평가 > 평가 매뉴얼 및 Q&A
  - (공지)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
  - (공지)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&A 사례집(2차) ...
  - (공지)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&A 사례집(1차)
  - (공지)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자료 게시 안내

# 6 기타 안내사항

## 가. 공지사항 및 매뉴얼 확인

### 매뉴얼 및 Q&A

☑ **경로**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알림·자료실 > 장기요양 기관평가 > 평가 매뉴얼 및 Q&A

**알림·자료실**

- 알림방
- 홍보관
- 자료실
- 복지용구 안내
- 장기요양 기관평가
  - 공지사항
  - 평가 매뉴얼 및 Q&A
  - 평가결과
  - 부정 평가기관 신고
- 뉴어 다운로드

**Long-term Care Insurance**  
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 
살던 곳에서 충분히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만들어집니다.

☐ > 알림·자료실 > 장기요양 기관평가  
○ 평가 매뉴얼 및 Q&A

검색

Total 14 (1 / 2 page)

번호	제목	작성자	작성일	첨부	조회
공지	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&A 사례집(2차)_수..	요양심..	2025-01-22	☐	694
공지	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자료 게시 안내	요양심..	2024-12-23		590
공지	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	요양심..	2024-12-19	☐	141E
공지	2024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	관리자	2024-02-05	☐	233E
공지	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&A 사례집(1차)	관리자	2024-02-01	☐	114C
21	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&A 사례집	요양심..	2024-12-23	☐	900



## 6

## 기타 안내사항

### 가. 공지사항 및 매뉴얼 확인

#### 주요 공지사항

- ✓ **경로**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알림·자료실 > 장기요양 기관평가 > 공지사항
  - (공지)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안내
  - (공지) 2025년 정기평가(시설급여) 분기별 일정 확인 안내
  - (공지) 2025년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 안내
  - (공지)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평가지표(질향상노력) 변경사항 안내
  - (게시번호 41)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 안내



6

## 기타 안내사항

### 나. 동영상 교육자료 확인

#### 동영상 교육자료

- ✔ **경로**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종사자마당 >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> 직무 관련 자료실
  - (게시번호 66050) 2024년 장기요양기관(재가급여) 평가매뉴얼 동영상 자료 ...
  - (게시번호 60049) '장기요양기관평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의 이해' 동영상 ...



6

기타 안내사항

나. 동영상 교육자료 확인

동영상 교육자료

☑ 경로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종사자마당 >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> 직무 관련 자료실



종사자마당

- 기관종사자 이력 코너
- 기관종사자 교육코너
- 직무 관련 자료실
  - 장기요양 업무 안내 e-Book
- 구인·구직
- 뷰어 다운로드




## Long-term Care Insurance

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 
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만들어졌습니다.

▣ > 종사자마당 >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
● **직무 관련 자료실**

- 
제목 ▾ 
🔍 검색

**Total 50** (1 / 6 page)

번호	제목	작성자	등록일	첨부	조회
60050	2024년 장기요양기관(재가급여) 평가매뉴얼 동영상 자료 게시 안내	관리자	2023-12-18		1927
60049	'장기요양기관평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의 이해' 동영상 자료 게시..	관리자	2023-09-26		3596

# 감사합니다

